

2013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회시집



2013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회시집



들어가며...

1 행동강령 시행 첫해인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각급 기관 및 일선 공직자들이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질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시결과는 행동강령의 해석·적용에 실질적인 지침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2 이 회시집은

그간의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질의·회신 사례와 쟁점 사항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3 회시집 관련사항

질의자, 신고자 및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은 실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을 사용하였으며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례 일부를 재구성한 부분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제2조

정의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8
2.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8
3. 계약 체결 중인 직무관련자로부터 해당 계약 담당부서의 직원 전체가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경우, 당해 부서 직원 전체가 행동강령 위반이 되는지? 8
4.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에 일회적으로 외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9
5. 민원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9
6. 건축허가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선물 등을 받은 경우, 위 건축업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9
7.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9
8. 모 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A)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B)가 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10

제3조

적용범위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파견공무원은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 12
2. 민간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도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 12
3.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 12
4.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으로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13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부당한 이익’이란? 15
2.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을까? 15
3.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데,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 15

4.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16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제5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면 반드시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하는지? 22
2.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5조의 이해관계에 놓인 경우 처리 절차는? 22
3. 제1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2
4. 건축허가 담당공무원(A)이 허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영향 평가서가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평가기관(甲)에 의해 작성되었음. 이 경우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23
5.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중인데, 후보 업체 중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인 국장이 1년 전에 임원으로 재직하던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23

제6조

특혜의 배제

□ 관련 규정

□ FAQ

1. '특혜'란 무엇인지? 24
2. 직무수행 상대자가 지연·혈연·학연·종교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될 수 있는지? 24
3. 모 지자체에서 상수도 검침원 채용 시 별도의 채용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동장 추천을 자격 요건으로 하여 운영해왔음. 검침원 결원이 발생하자 잔여기간 동안 근무할 검침원을 선발하는데 그간의 관례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채용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25
4. 기관 내 종교모임이 특정 종교인과의 오찬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왔음. 기관장이 해당 오찬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25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클린카드' 제도란? 28
2. 각급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모임(단체장 협의회, 교장단 협의회 등)의 연간 회비를 학교회계 예산(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한지? 29

3.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29
4. 팀장이 관내 행정기관 공무원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단란주점으로 간 후, 단란주점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29

제8조 정치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관련 규정

□ FAQ

1. ‘정치인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31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관련 규정

□ FAQ

1.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33
2.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를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33
3. 공무원이 고등학교 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한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33

4.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단체 임원으로 인사이동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에 임명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33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지? 38
2. 공무원(A)이 지인(B)을 취직시키고자 업무상 알게 된 업자(C)에게 B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C는 공개모집 형태로 채용해야 할 수납직을 B에게 제의하였으나, B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채용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위반인지? 38
3. 기관장이 기관 산하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 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 임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이권개입에 해당되는지? 38

제10조의2 **직위의 사용 이용 금지**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공직자가 친구의 경조사에 현재 근무하는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위반인지? 42
2. 공직자가 경조사를 통지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위반인지? 44
3. A기관의 기관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기관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44
4. 기관장이 이전 대학교수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출판 서적에 추천사를 적어주면서 자신의 현재 소속 기관과 직위를 함께 명기하는 경우? 44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관참은지? 49

2.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 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49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기관장이 2년 전 국책사업 발주 결재를 한 직후 관련 기관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음. 기관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속 기관의 업무를 다루는 직위인데 행동강령 제12조가 적용되는지? 53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업무용 차량을 소속 공직자의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55

2.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보너스 상품권(페이백)을 개인이 써도 되는지? 55
3.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55
4. 공무원이 사적인 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55
5. KT에서 모든 전화이용 고객에게 “콜보너스”(상품권으로 전환하여 구매 가능)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3,600천 원 정도의 누적된 콜보너스를 체육행사 기념품이나 기관 방문 내빈에게 간단한 기관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56
6. 겸직허가를 받고 사립 대학교에 출강하는 기관장이 출강 시 공용차를 이용해도 되는지? 56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병원에 입원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병문안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64
2. 여러 부하공무원들이 각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3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할 수 있는지? 64
3. 관내 모 복지재단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업무담당 공무원 포함)에게 주는 상을 받고 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선진지 해외 견학을 다녀와도 되는지? 64

4. △△포럼에 참석하였고 포럼이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경품추첨이 있었음. 참가자 전원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종 이기는 사람에게 경품이 돌아가는데 받아도 되는지? 65
5. 교사가 타 학교로 전출한 상태에서 전출 전 학교의 학부모가 직무관련자 인지? 65
6.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무엇인지? 65
7.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65
8. 법인카드사가 연간 사용실적에 따라 포상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 (인센티브)에 담당직원(회계부서)이 다녀올 수 있는지? 66
9.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인지? 66
10. 공무원이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의 골프장에 골프 예약을 요구하며, 골프비용을 할인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66
11. 지역 내 종교단체에서 △△시 모범공직자 몇 명에 대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교단체장 명의의 표창을 실시하고, 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선진지 연수를 제공하기로 함. 모범공직자 선정 요청이 왔는데 이에 응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될지? 67
12. 추석을 맞이하여 학교장이 업무추진비로 회계담당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67
13. 제14조제2항제4호의 “홍보용 물품”의 의미 및 가격 상한선? 67
14.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장이 명절을 맞이하여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74

15. 최근의 물가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음식물·편의의 상한선인 3만 원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74
16. 제14조제2항제4호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이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 74
17. 행동강령의 금품도 대가성 여부를 따지는지? 74
18. 1회당 상한선 금액을 준수한다면 상습적으로 접대 받아도 무방한
것인지? 75
19. 공사 준공식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도 받을 수 없는지? 75
20. 모 단체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의 관람표(초대권)를 홍보차 감독부처
공무원들에게 보내왔는데 이를 제14조제1항제4호가 허용하는 홍보용
물품으로 보아 받아도 되는지? 75
21.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76
2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금품을 ‘받는’ 행위 제한
(제14조) 위반일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주는’ 행위 금지(제14조의2)
위반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76
23.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 기관의 업무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도 행동강령에서 제한하는지? 77
24. 乙부처 예산담당 공무원(A)이 예산 총괄 甲부처 공무원(B)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환을 선물했으나 거절하여 반송되어야 온
경우에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77
2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 접대비가 1인 1회 4만 원까지

가능하여 행동강령 상 음식물·편의 수수 상한선(3만 원 이내)과
부합되지 않아 양 규정 간 상이한데? 77

26. 제14조제2항제3호의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 77

27. 행동강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 초과분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부서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추석
선물로 5만 원 짜리 선물을 받고 기준(3만 원) 초과분인 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경우? 78

제14조의2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교직원이 소속 학교 교장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개인비용으로 동양
난을 구입하여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때 동양 난을 경조금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선물로 보아야 하는지? 81

2. A부처 예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B부처 공무원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7만 원짜리 화환을 선물하였으나 B부처 공무원이
거절하여 반성되어 온 경우에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동강령 위반인지? 81

제15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신고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의 기준? … 86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 86
3.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86
4. 기관장이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 87
5.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 87
6. 근무시간 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87
7. 휴직 중 외부강의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87
8. 외부강의 시 근무상황 처리(출장 또는 연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88
9. 산하기관에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요청하고 소정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함. 이를 받고 출강해도 되는 것인지? …… 88
10.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 5월 권고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은 무엇인지? …… 88
11. (외부강의 대가 상한선 기준 관련) 직무관련 강의·강연은 대가 상한선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직무’란 무엇인지? …… 89

12. (외부강의 대가 상한선 기준 관련) 공무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대가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지? 89
13. '대외활동신청서'가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 89
14. 신고서 제출 당시 대가 여부나 규모 등 신고항목 중 일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사후에 신고해도 되는지? 90
15. 교사가 모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집필계약금 및 집필료를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90
16. 신문 등 공개매체에 기고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90
17.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90
18. 신고서에 기재하는 대가는 세전(稅前)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후(稅後)를 기준으로 하는지? 91
19.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 매 출강 시 신고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일괄로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91
20. 열거된 행위유형 외에 신고대상은? 91
21. 도시건축전문가인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대가로 수당을 받은 경우 91
22. 공무원이 소속 산하기관에 강의를 오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91
23. ◇◇청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들에게 ◇◇청의 소속기관인 ◇◇교육원에서 관련 강의를 함. ◇◇교육원이 ◇◇청 직원들에게 요청하여 강의를 하고 KOICA예산으로 강의료를 지급했는데 신고하여야 하는지? 92

24. 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포커스』, 소비자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KDI 『알기쉬운 나라경제』 등에 기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92
--	----

제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96
2. 공직자가 시세 월100만 원의 주택을 월50만 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임차받는 것은 가능한지? 96
3.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자인 乙의 소개로 직무관련이 없는 丙(乙의 친구)으로부터 금전을 빌렸을 경우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96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관련 규정

□ 질의회시 사례

□ FAQ

1. 경조사의 범위는? 102

2. 학교장이 남편의 개업식에 참석한 현재학교 및 전임학교 교직원으로부터 개업축하금을 받았음. 교직원들은 개업식 사실을 통지받음 바 없이 우연 히 참석한 것이며 축하금을 교장에게 직접 전달치 않고 고사상에 냈는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102
3.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102
4. 경조사 통지 시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가 가능한지?	102
5.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아닌 경우 통지 가능한지?	103
6.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103
7.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스로 통지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 직원에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지?	103
8.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10만 원의 근조화환을 보내면 행동강령 에 위반되는지?	105
9. 기관장은 예산으로 5만 원(기관장 자격), 자비로 5만 원(개인 자격) 동시 에 경조금품을 줄 수 있는지?	105
10.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105
11.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 원의 경조금을 낸 경우, 처리절차는?	105
12. 공무원이 승진하였는데, 이를 경조사로 보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5만 원 이내의 축하화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06

□ 질의회시 사례

1. 성희롱 금지를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109
2.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109

제2조 정의



관련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 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자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가’ 지자체의 ‘A’ 부서는 ‘a, b, c, d, e’의 5개 팀으로 구성
- c팀의 주요 업무는 ‘건인사업소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관리, 무인 단속시스템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주정차 압류등록, 압류해제 및 CCTV 상황실 운영’ 등임.
- A부서의 부서장 甲과 a, b, c팀의 팀장 乙, 丙, 丁은 c팀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팀의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소(건인 대행업소) 운영자 戊로부터 개인별로 각각 50여 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 받음

◆ 질의 사항

- 상기 사안에 있어서 戊는 甲과 丁 외에 a,b팀의 팀장인 乙 및 丙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가?

검토 의견

- 직무관련자 관계 성립 여부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개별 공무원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그러므로 담당자 이외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는 특정인과 관련된 사안이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해당 특정인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다른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특정인과 관련된 사안이나 업무의 처리 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면 그들도 해당 특정인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나 담당업무, 소속부서, 결재권 유무 등이 아니라 관련 사안이나 업무에 대한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예 : 학교에서 체육교구 구입 시 체육교사가 교구의 사양이나 특정 제품군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체육교구상은 해당 학교의 회계직원 외에 체육교사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사)◇◇◇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재난직무와 관련하여 재난 예방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국외연수를 주관하며 교통비, 숙식비 등을 제공할 계획인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학교 재난업무담당자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 여부?
* 각 급 학교는 공제회와 공제보험 계약을 체결

검토 의견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금품 등’이란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말하므로 해외연수도 이에 포함됨.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일정한 자로서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열후적 관계에 있는 자(소위 甲-乙 관계에 있어서의 乙)를 의미함.
 -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공제회와 공제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행동강령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바, 해당 업무 담당자의 범위는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내용을 살펴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시기 바람.

(2011. 5. 20. 행동강령과)

사례 3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산림부서 회식자리에 산림개발업자(A, 전 동료공무원으로 회식 참석자들과 서로 알고 지낸 사이임)가 참석하여 회식비를 일부 지불하였음.
- 참석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상조회비를 통해 회식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참석하였고, 실제로 일부 직원은 A가 지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지불금액을 안분할 경우 3만 원 미만임.
- 회식 당시에는 A가 제출한 관련 인·허가 신청은 없었으며, 산림에 대한 불법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음.
- 향후 A는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중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함(당시 지불한 회식비).

◆ 질의 사항

- ① A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지?
- ② 전 동료공무원인 A과 제공한 금품 등을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분한 회식비가 3만 원 미만)'으로 볼 수 있는지?
- ③ 당시 회식 참석자 중 각 사례에 해당하는 직원을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지?

가. 직접 인·허가 업무와 관련 있고 대금지급사실을 알았던 직원
 나. 직접 인·허가 업무와 관련 있고 대금지급사실을 몰랐던 직원
 다. 직접 인·허가 업무와 관련 없고 대금지급사실을 알았던 직원
 라. 직접 인·허가 업무와 관련 없고 대금지급사실을 몰랐던 직원

검토 의견

○ <질의①, ③>에 대한 회답

- 질의 사례의 경우 A가 회식비용을 제공하는 시점에 산림부서에 인·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산림개발업자인 A는 산림부서의 업무 중 인·허가 업무 외에도 각종 행정지도 및 단속업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산림부서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A와 산림부서 직원 간 직무관련 관계 성립 여부는 산림부서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함께 살펴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직무관련자 여부는 행동강령 제2조제1항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 사실 판단이므로 개별 공무원이 타인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질의 ②>에 대한 회답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란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3만 원)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을 말하므로 질의사례와 같이 회식비용을 제공받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음.

(2011. 4. 19. 행동강령과)

FAQ

●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관업무’란 법령,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됨.

●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 » 해당 업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로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이 해당됨. 업무담당 부서 내 담당자 이외의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음.

● 계약 체결 중인 직무관련자로부터 해당 계약 담당부서의 직원 전체가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경우, 당해 부서 직원 전체가 행동강령 위반이 되는지?

- » 직무관련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별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며, 부서장과 담당자 외에도 향응을 제공받은 다른 직원이 계약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에 일회적으로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일지라도 평가대상 업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임.

● 민원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 해당 민원의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됨.
(상급자일수록 직무관련자 범위가 넓어짐.)

● 건축허가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선물 등을 받은 경우, 위 건축업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 건축공무원의 직무관련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업자로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건축업자는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음.

●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 향응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몹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이발소 등), 교통·숙박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 모 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A)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B)가 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B는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아닐지라도 하도급업체는 지자체의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됨.

제3조 적용 범위



관련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2

질의 내용

- 「○○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적용범위 대상에 사립학교(유치원)의 교직원 및 각 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을 포함시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 의견

-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위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기관별 행동강령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종의 관련규정(예: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관별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2013. 7. 15. 행동강령과)

FAQ

▶ 파견공무원은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

- ▶ 공공기관에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다만, 민간 기관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받음.

▶ 민간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도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

- ▶ 공무원으로서 민간 기관에 파견 중인 공무원일지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적용대상이며, 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음.

▶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 단체 내부 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최근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하여 2011. 2. 3.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으로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회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근 임직원임. 그러므로 상근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비상임 이사가 정책 결정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자체 판단하여)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관련규정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FAQ

● ‘부당한 이익’이란?

- »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함.

●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을까?

-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이 위반행위 신고는 아니지만, 향후 위반 신고로 전환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상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비밀보장을 해야 함.

●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데, 이에 따른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 »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 거부할 수 없음.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23조에 의하여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상담 및 신고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관련규정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 ○○우편취급국의 수탁자의 자격상실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모집 공고(2012.12.4.)를 하였고
- ❖ 甲은 해당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령에 명시된 응모 자격에 근거하여 모 우체국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응모함.
- ❖ 위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甲을 추천한 우체국장이 甲의 아버지(이하 “乙”)라는 사실이 밝혀짐.
 - ※ 乙은 甲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르는 상태로 소속 기관 내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甲이 자신의 아들임을 우연히 언급
- ❖ 乙은 2013. 1. 1. 타 우체국으로 전보 조치됨.
- ❖ 상급기관인 지방우정청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2013.1.9.)을 거쳐 甲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지방우정청과 계약 체결함.

❖ 질의 사항

- ① 乙이 자신의 직계비속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관련 규정을 모른 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은연중 피 추천자와 자신이父子관계임을 언급(상담기록 없이)하기만 한 것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② 기관의 장으로서 상담하여야 할 행동강령책임관은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인지, 또는 해당 기관 내부에서 근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인지?
- ③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과정과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져야 하는지?
- ④ 직계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관련되어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제5조와 특정인 차별을 금지하는 제6조가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의견

- 〈질의①〉에 대한 회답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에 관한 상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는바,
 -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문의하는 것을 상담으로 볼 수 있고
 - 乙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한 것이 이러한 상담에 해당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②〉에 대한 회답
 - 원칙적으로 기관 내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도 가능할 것임.
- 〈질의③〉에 대한 회답
 - 행동강령 제23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9조에 의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함.
- 〈질의④〉에 대한 회답
 - 행동강령 제5조에서 직계비속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직무 회피 등 필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담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 일시적인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혈연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므로 제5조와 제6조 모두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서로 충돌한다고 보기 어려움.

(2013. 2. 28.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검사서와 시료를 제출하면 시료를 시험기에 넣어 시험성적(기준 이상 또는 이하 여부만 판단)만 단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5조 각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회피 등 여부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민원으로 보아도 되는지?

검토 의견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하여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같은 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 다만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 여기서 ‘단순 민원 업무’란,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교부, 지방세납세 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업무 등과 같이 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됨으로 인해 업무 처리의 방향이 좌우될 여지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업무의 종류는 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012. 5. 2. 행동강령과)

FAQ

● 제5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면 반드시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하는지?

- ▶ 제5조는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라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회피 등 조치할 수 있음.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5조의 이해관계에 놓인 경우 처리 절차는?

- ▶ 기관장일지라도 직무의 회피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함. 이때,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상담기록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장 스스로 또는 상급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임.

● 제1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상담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상담내용과 상담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권한의 범위에서 직무 재배정이 가능한 경우 조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건축허가 담당공무원(A)이 허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평가기관(甲)에 의해 작성되었음. 이 경우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 A의 배우자가 해당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등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업무처리 방향에 따른 직무관련자라면 A는 甲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사업무의 회피 등 여부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중인데, 후보 업체 중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인 국장이 1년 전에 임원으로 재직하던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행동강령 제5조제1항 다목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회피 등 여부에 대하여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제6조 특혜의 배제



관련규정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FAQ

● ‘특혜’란 무엇인지?

» 특혜란 법령 등의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타 집단과 차별하는 행위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연고나 종교 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나 가치배분의 왜곡을 말함.

● 직무수행 상대자가 지연·혈연·학연·종교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될 수 있는지?

» 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혜라 볼 수 없고,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 모 지자체에서 상수도 검침원 채용 시 별도의 채용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동장 추천을 자격 요건으로 하여 운영해왔음. 검침원 결원이 발생하자 잔여기간 동안 근무할 검침원을 선발하는데 그간의 관례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채용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 특혜의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비록 ‘실무상 관례’ 일지라도 그간 예외 없이 반복 적용되어 형성된 관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적용 배제하고 특혜를 주었다면 위반

● 기관 내 종교모임이 특정 종교인과의 오찬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왔음. 기관장이 해당 오찬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 행동강령 제6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연고·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례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관련규정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공무원이 외부강의 시 소속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검토 의견

- 공무원이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 대가를 받으면서 소속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장여비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외부강의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 소속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로서
 -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지 않거나 여비와 관련된 여비와 관련된 실비가 강의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됨.
-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소속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반됨.

(2012.11.12.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지역 내 면사무소, 학교 등 여러 기관의 기관장 모임인 “☆☆회”에 학교장이 참석하면서 월정액 회비를 학교회계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검토 의견

-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된 지침 등 규정을 살펴야 하므로
 - 질의주신 “☆☆회”의 월정액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 교육청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함.
-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근거 없이 결성되는 사적 임의단체(지역 내 학교장 협의회 등)의 적립식 회비(현금)를 예산으로 납부하는 행위를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으로 확인하여 해당 학교에 위반통보 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9. 25. 행동강령과)

FAQ

● ‘클린카드’ 제도란?

▶ 공공기관은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舊)부패방지위원회가 제도 도입('05년)하여 (舊)국가청렴위원회가 의무적 사용금지를 권고('07년) 하였음. 클린카드를 제한된 사용처에 사용한 경우도 행동강령(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임.

※ 참고자료 :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167~168)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 개선방안('07. 10월)」과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 ('11.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테일바,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 위생업종(아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각급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모임(단체장 협의회, 교장단 협의회 등)의 연간 회비를 학교회계 예산(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한지?

»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사적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학교장 협의회 등)의 회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함.

●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즉, 초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제7조 위반임. 다만, 외부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 지급 가능

● 팀장이 관내 행정기관 공무원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단란주점으로 간 후, 단란주점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 위반임. 클린카드인 법인카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결제가 허용됨.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금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는 것임.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관련규정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FAQ

'정치인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정 당 :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후원회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정치자금법」 제3조)
정치단체 : 정치사조직 포함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관련규정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FAQ

●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부탁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 »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임.

●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를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 » 청탁이나 부당한 개입의 의도 없이 인사 상담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 공무원이 고등학교 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한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 »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청탁하게 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수행비서도 행동강령 위반임.

●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단체 임원으로 인사이동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에 임명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 » 행동강령 제9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됨.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관련규정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도 공무원(녹지 6급)이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시와 ◇◇군의 국고보조조립사업 등에 신청하고 ○○시와 ◇◇군 담당자에게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잘 처리해 달라는 등의 부탁 전화를 하여 사업선정 등에 이익을 제공받았음.

* 당사자는 부탁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편의를 제공받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은 공무원의 부탁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모두 위반하였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검토 의견

- 도청 공무원이 국고보조 조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관내 시·군에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고 시·군 공무원에게 사업자 선정 등을 부탁하는 행위와 관련
 - 도청에서 녹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급기관인 시·군 공무원에게 직무상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되며
 - 도청 공무원이 현금보조 조립사업 선정, 산주희망 조립사업 선정 등에 있어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시·군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임.
 - 아울러, 알선·청탁 등의 금지 조항은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을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4.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계약의 승인을 갖고 있는 △△부처 공무원(이하 “갑”)이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 당사자인 국내기관(구매자, 이하 “A”)의 주선으로,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외국업체(판매자, 이하 “B”)로 하여금 △△부처의 다른 소속 직원(이하 “을”)에게 외국 C대학 석사과정 학비와 체재비(총 13억 원 규모)를 지원 하도록 한 경우
- ※ 유학자금 등 지원방식 : △△부처 인사과장, 국내기관 A 인사과장, 외국업체 B, C대학 간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서 체결(△△부처 공무원 2인은 외국업체 B의 지원으로, 그리고 국내기관 A의 직원 2인은 해당 기관 예산으로 C대학에 유학 중)

◆ 질의

- ① 위와 같이 유학자금 등 지원을 주선한 A기관 소속 직원의 행위가 A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위와 같이 ○○계약의 승인권자인 “갑”이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부처의 “을”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
 - “갑”이 “A”와 “B” 간의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업무는 감독, 결정 등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과 유사하다 할 것이고, ○○계약 체결의 승인 여부에 따라 “A”와 “B”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A”와 “B”는 계약체결의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갑”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함.
- <질의 ①, ②>에 대하여
 - “갑”이 ○○계약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부처 소속 공무원인 “을”에게 지원하게 한 것이 △△부처의 ○○계약체결 승인과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B”로 하여금 △△부처 소속 공무원 또는 특정 공무원 “을”에 한정하여 유학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특혜로서 부당한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주선했던 “A”의 소속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와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상당함.
 - 또한 “갑”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함이 상당함.

(2013. 4. 9. 행동강령과)

FAQ

●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지?

»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신용카드 가입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각 팀 서무를 일괄적으로 불러 팀별로 가입신청서를 할당·회수토록 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

● 공무원(A)이 지인(B)을 취직시키고자 업무상 알게 된 업자(C)에게 B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C는 공개모집 형태로 채용해야 할 수납직을 B에게 제의하였으나, B가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채용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위반인지?

» 부당이익 추구로 인해 실제 어떤 이익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B가 채용되지 않아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A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행동강령(제10조) 위반임.

● 기관장이 기관 산하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 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임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이권개입에 해당되는지?

» 기관장이 사업 결재권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임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관련규정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공립학교 교사(A)는 업체(甲)의 요청으로 교과서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작성하여 소감문을 송부하였고, 甲은 그 소감문을 토대로 교과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영업활동에 이용하였는데, A가 소속 기관 명칭 및 직위, 실명을 전단지에 명시한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의견

- 교과서의 홍보용 전단지에 활용될 소감문을 A가 작성해주었고, A가 직무와 관련 없이 해당 교과서의 판촉을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A의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방조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2012.10.11.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사)△△연구원(이하 “사단법인”)을 만들어 2006. 6. 30. 설립허가를 받음.
- 위 사단법인이 월간지를 발간하는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산하 학교 및 행정기관에 “위 월간지 구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비회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 기타 사단법인의 안내사항을 공지함에 있어 사단법인의 사무국장 직책을 수행(겸직)하면서 자신의 공직인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명의로 임원인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의 명단을 공문서상에 함께 표기
-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에 위배되는지 여부?

검토 의견

- 사단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간부들이 사단법인 명의의 공문을 작성·발송하면서 “☆☆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으로 자신들의 소속기관과 직위를 병기한 행위는 소속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단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게시하여 이용한 행위이므로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됨.

(2010. 1. 6. 행동강령과)

사례 3

질의 내용

- 공무원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책을 번역하여 발간하고자 함.
-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처의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명칭과 본인의 이름을 넣어 ‘추천의 글’을 작성하여 해당 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 의견

-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부처명과 이름을 적은 추천서를 특정 책에 포함시킬 경우, 관련 업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책을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반면,
- 업무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의 추천서가 포함됨으로 인해 일부 업체와 국민들은 해당 책에 대한 구입 압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추천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책이라는 오신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오신 등은 해당 책의 판매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기관의 직무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책을 추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 도서’나 ‘우수 도서’로 정식 선정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 6. 13. 행동강령과)

FAQ

● 공직자가 친구의 경조사에 현재 근무하는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위반인지?

»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친구의 개업식 등에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환을 보내어 공표·게시하는 행위는 위반임. 참고로, 이 경우에도 경조금품의 상한선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기관별 행동강령에 정해진 상한선(5만 원 이내) 이내의 화환을 보내야 할 것임.

※ 경조사는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적용 예시

〈금지되는 행위〉

- ❖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 ❖ 친구의 개업식 장소에 자신의 기관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을 보내 게시토록 하는 행위
- ❖ 자신의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기관명칭이나 직위를 홍보를 위해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을 등을 게재하는 행위. 단, 프로필(이력)에 다른 경력과 함께 단순 기재한 경우는 제외

〈금지되지 않은 행위〉

- ❖ 기관장이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업무추진비로 기관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이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
- ❖ 자신의 기관명칭이나 직위를 명기한 액자를 개인집에 걸어놓게 하는 행위
-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 ❖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 ❖ 경조사의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경우
- ❖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자신의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 ❖ 동창회, 결혼식 등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행위
- ❖ 기관장이 업무 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토록 하는 행위

● 공직자가 경조사를 통지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위반인지?

» 경조사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사가 아니므로 위반 아님.

● A기관의 기관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기관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 기관장이 이전 대학교수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출판 서적에 추천사를 적어주면서 자신의 현재 소속 기관과 직위를 함께 명기하는 경우?

» 타인의 출판 서적에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 추천서를 적는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관련규정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공무원이 공직 취임이 예정된 사람에게 취임 후에 수행할 직무에 대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경우에 행동강령 위반이 되는지?
- 가령,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임기 개시 전)에게 취임 후 해당 지자체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한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1항 위반인지?
- 공무원이 알선·청탁을 다른 공무원에게 한 경우에 위반인지? 아니면 알선·청탁을 하는 상대방의 신분은 불문하는지?

검토 의견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청탁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불문하는 것이며, 청탁의 결과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경우라면 위반임.
- 공무원이 임기 개시 전의 지자체장 당선자에게 후일 본인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해주길 부탁하였다면, 이는 향후 해당 지자체 소속 인사업무 담당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게 되므로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것임.

(2012. 5. 31.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일부변형)

◆ 사실관계

- 학교장이 교장실로 교사 6명을 불러 은퇴 후 개인적으로 “☆☆☆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특정연수 업체(당해 학교로부터 현재 학생교육을 수탁하여 운영 중, 이하 “甲업체”)에서 사비(私費)로 연수받을 것을 권유
- “원래 275만 원 짜리 20주 코칭 연수를 120만 원의 파격적인 조건을 해주고 있다.”, “120만 원이 뭐가 큰 돈이냐. 120만 원을 분할해서 납부해도 된다. 정 힘들면 돈을 빌려주겠다.”, “교실에서 열심히 자기반 아이들밖에 모르고 자기 반만 잘 가르치는 교사는 어리석다. 너무 생각이 좁다. 행정 쪽으로 나아가서 승진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교사들을 설득
- 교사 9명이 甲에서 1인당 120만 원(총 1,080만 원)을 지불하고 연수를 받았음.
- 추후에 甲으로부터 연수비 총액의 10%인 108만 원을 1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회식비로 사용

◆ 질의 사항

- ① 학교장의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② 甲업체로부터 연수를 받은 교사 9명이 수강료의 10%를 회식비로 환급받은 것은 행동강령 제14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 의견

- 〈질의①〉에 대한 회답
 - 행동강령 제11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것을 금지
 - 그러나,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연수를 강요한 것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였는지가 질의에 나타나지 않아 제11조제2항 여부 판단이 곤란함.
 - 참고로 교사들이 자발적 의지가 아닌 학교장의 강요에 이기지 못해 甲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연수를 받았다면 이는 학교장에 의하여 甲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질의②〉에 대한 회답
 - 업체 甲으로부터 교사들이 수강료 중 일부(10%)를 별도로 되돌려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제14조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 업체 甲이 해당 교사들에게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가령, 교사들이 업체 甲 해당 학교의 학생교육 수탁자로 선정되는 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 甲업체가 수강료의 일부를 다시 환급한 구체적인 사유 등 사실 관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

(2012. 1. 6. 행동강령과)

FAQ

-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 제11조에 위반됨.

-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 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에 위반됨.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관련규정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공무원이 해당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거래, 투자에 도움을 준 경우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 예를 들어, 담당업무는 A업무이나 해당 기관의 A업무와 관련이 없는 B, C 등의 정보를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본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투자를 하게 한 경우

검토 의견

- 행동강령 제12조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임.

(2011. 6. 24.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공사 △△△지사는 「◇◇◇지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대상 토지는 2,298㎡로서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용지매수가 협의 중 감정평가 금액이 ㎡당 37,000원으로 평가되었고 ◎◎공사가 645㎡ 일부 매입할 예정이었음.
- 토지소유자(B)가 전체 2,298㎡를 매수해줄 것을 요구하여 용지매수 협의가 지연

- 그런데 협의 도중 위 토지가 국립공원 지정 해제됨.
- 당시 사업관리 총괄팀장(A)이 사업편입 예정농지 2,298㎡를 국립공원 해제된 지 10일 후 B로부터 금 1억 4백만 원(㎡당 42,250원)에 실명으로 매수
- 이후 토지에 대한 재평가 결과 ㎡당 71,500원으로 상승하여 약 8천만 원의 차익 실현

◆ 질의 사항

- 위 사항이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검토 의견

-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됨.
- 여기서 ‘정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로서
 -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접근이 차단되어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 즉 정보에의 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공직자가 일반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A가 매입하려던 토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지가(평가액)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가 토지를 매입하려던 시점에 미공개 내부 정보였다면, 차익 실현을 위해서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2012. 11. 28. 행동강령과)

FAQ

● 기관장이 2년 전 국책사업 발주 결재를 한 직후 관련 기관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음. 기관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속 기관의 업무를 다루는 직위인데 행동강령 제12조가 적용되는지?

» 행동강령 제12조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관장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관련규정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질의 내용

- 학교예산으로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사이트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였음.
- 조기에 회원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로서, 학교를 무작위 추첨하여 1등으로 당첨된 학교의 가입교사 수만큼 캠코더를 상품으로 준다고 함.
- 상품으로 받은 캠코더를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검토 의견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상품으로 받은 캠코더를 학교비품으로 등록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개인이 수익할 수 없음.

(2009. 4. 27. 행동강령과)

FAQ

● 업무용 차량을 소속 공직자의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 원칙적으로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공직자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제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보너스 상품권(페이백)을 개인이 써도 되는지?

» 페이백 상품권은 예산 사용으로 인한 부가서비스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지?

»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

● 공무원이 사적인 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검찰에 출두하는 사유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유라면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

- KT에서 모든 전화이용 고객에게 “콜보너스”(상품권으로 전환하여 구매 가능)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3,600천원 정도의 누적된 콜보너스를 체육행사 기념품이나 기관 방문 내빈에게 간단한 기관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콜보너스”와 같은 마일리지 제도는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무로 사용하여야 함. 따라서 “콜보너스”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자체행사 기념품이나 기관 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겸직허가를 받고 사립 대학교에 출강하는 기관장이 출강 시 공용차를 이용해도 되는지?

»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출강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이 경우 겸직허가 여부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관련규정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운영지침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공단이 2008년도 수입대행 계약 체결에 앞서 2007년도 수입대행 계약 체결하고 있는 (주)○○○ 대표 및 직원 3명으로부터 계약담당부서인 공단 연구지원팀 직원 8명 전체가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경우
- (주)○○○은 연구지원팀과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고 (주)○○○이 연구지원팀 전체직원을 접대하는 자리로 부서 직원의 단체행동은 직무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지원팀 전체 직원을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한 것은 정당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및 입장은?

검토 의견

- 공단 연구지원팀이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로부터 연구지원팀 팀원 전원이 식사 접대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
- (주)○○○는 공단과 수입대행계약 체결관계에 있으므로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조제1호 라목에 의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며, 해당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단의 연구지원팀장과 연구지원팀 계약담당자의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임.
- 그러나, 연구지원팀 팀원 8명 전체가 (주)○○○로부터 식사 접대를 제공받은 경우에 팀장과 계약담당자 이외에도 식사접대를 받은 팀 내 다른 직원들의 의견이 수입대행 계약업무 처리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면 다른 팀원들도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로 보아야 하며
- 이들이 (주)○○○로부터 음식물 접대를 받은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2010.12.16.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회사(이하 “당사”)경우, 법인카드 총괄관리 및 카드대금 결제는 자금팀에서, 복지카드 사용계약 및 은행선정은 노무복지팀에서 주관하고 있고,
 - 상기 “우수기업회원 인센티브 행사”에 참가를 권유하는 ☆☆ 카드사 및 ○○은행의 공문을 정상적인 대외문서 접수 및 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고, 해당 팀(자금팀, 노무복지팀)에서 공문을 비공개하였으며
 - 참가자의 선정도 해당 팀 소속 직원, 해당 팀의 업무결재선에 있는 직원 또는 해당 팀과 관련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암리에 선정, 참가하게 하였음.
 - 법인카드 및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매년 1~2명의 당사 소속 직원이 상기 행사를 통해 해외관광 등을 다녀온 바 있음.(개인휴가 사용)

◆ 질의 사항

- △△회사(이하 “당사”)가 법인(기업)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 카드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우수기업회원 인센티브 행사”란 명목으로, 해외연수 또는 문화공연을 ○○은행 부담으로 시행하는 바, 상기 행사에 당사 직원이 참가하였을 경우 행동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검토 의견

- 법인카드와 복지카드 담당부서 직원(부서장 등 상급자 포함)은 관련 카드사 및 회원은행과 직무관련관계에 있으므로(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조제3호 라목), 관련 카드사나 회원은행이 제공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다만 상기 직무관련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투명하고 정당한 선발(추천) 절차를 거쳐 참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례 세부내용'과 같이 법인카드 및 복지카드 담당부서 직원이 당해 카드사 및 회원은행이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이는 『OO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겠음.
- 또한 여행 관련 공무원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관계자 외 여타 직원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고, 참가자 또는 비공개로 암암리에 선발하였다면 이는 관련 직원이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서 『행동강령』 제13조(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2010. 8.30. 행동강령과)

사례 3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A학교 교장의 남편 개업식에 해당학교 교직원 6명 및 학교장의 전임자인 B학교의 교직원 12명 정도가 참석하여 일부 교직원들이 개업 축하금을 냈음.
- * A학교 교직원들은 학교장이 직접 개업식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고 우연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진술
- * B학교 교직원들은 학교장으로부터 개업식 참석을 요청받고 참석
- * 축하금은 학교장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고 고사상에 냈음.

◆ 질의 사항

- ① 위 개업식이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서 규정한 ‘경조사’에 해당되는지?
- ②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업식에 참석한 교직원들로부터 축하금을 받는 행위가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서 규정한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 ③ B학교 교직원들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는지?
- ④ A학교 교직원들이 제공한 축하금만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검토 의견

- 〈질의①〉에 대한 회답
 - 개업식은 행동강령 제17조가 규정한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②〉에 대한 회답
 - 학교장이 본인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개업 축하금 명목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제14조에 위반됨.
- 〈질의③〉에 대한 회답
 - 학교장의 전임지였던 B학교 교직원들은 학교장이 현재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면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④〉에 대한 회답
 - 학교장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은 행동강령 제14조의 수수 제한 금품 등에 해당됨.

(2013. 3. 20. 행동강령과)

사례 4

질의 내용(일부변형)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제4호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부(중앙행정기관)의 직무상 감독을 받는 △△청(중앙행정기관)의 모 부서장(4급)이 ◇◇부 소속 담당공무원(6급)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 단순 직급으로만 보면 4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상급자에게 하급자에게 주는 금품 등으로 보아 허용되는 것인지?

검토 의견

-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 여기서 하급자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부하 공무원을 말함.
- 질의에서 감독기관의 하위직급 공무원은 피감독기관의 상위직급 공무원의 지휘·명령을 받는 부하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격려금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012. 5. 26. 행동강령과)

사례 5

질의 내용

-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현 국회의원으로 금번에 재선)에게 기관장 명의로 축하 화환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 의견

-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은 동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그러나 현재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회의원은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품 수수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 기관장이 국회의원에게 당선축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14조의2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항은 아님.
- 다만, 기관의 예산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 관련 규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할 것임.

(2012. 4. 14. 행동강령과)

FAQ

● 병원에 입원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병문안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개인적으로 병문안 온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허용되는 예)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을 돕기 위하여 관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금품등

● 여러 부하공무원들이 각출하여 새로 부임하는 과장에게 3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할 수 있는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선물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동조 제2항제2호에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약 3만 원 한도)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관련공무원인 부하 공무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도 상급 공무원 입장에서 선물수수 허용한도를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들로부터의 선물 수수는 제한이 없음.

● 관내 모 복지재단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업무담당 공무원 포함)에게 주는 상을 받고 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선진지 해외 견학을 다녀와도 되는지?

» 복지재단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이 당해 부상을 제공받는 것은 위반임.

● △△포럼에 참석하였고 포럼이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경품추첨이 있었음. 참가자 전원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최종 이기는 사람에게 경품이 돌아가는데 받아도 되는지?

» 참가자가 공무원 외에도 다양하고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경품을 주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할 것임. 그러나 추첨의 형식만 빌릴 뿐 사실상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음.

● 교사가 타 학교로 전출한 상태에서 전출 전 학교의 학부모가 직무관련자인지?

»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직무관련성은 양자가 동일 학교에 다니며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기간에 한하여만 성립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무엇인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해야 함.

●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각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단,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소액(3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됨.

● 법인카드사가 연간 사용실적에 따라 포상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인센티브)에 담당직원(회계부서)이 다녀올 수 있는지?

» 회계담당직원에게 법인카드사는 직무관련자이므로 기관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회계부서 담당직원이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위반임. 다만, 상기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기관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참가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 가능

●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인지?

» 향응이란 접대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임.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 공무원이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의 골프장에 골프 예약을 요구하며, 골프비용을 할인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강령 위반임.

- 지역 내 종교단체에서 △△시 모범공직자 몇 명에 대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교단체장 명의의 표창을 실시하고, 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선진지 연수를 제공하기로 함. 모범공직자 선정 요청이 왔는데 이에 응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될지?

* 이 종교단체는 △△시 사업부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각종 민간위탁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

- ▶ △△시가 주관하는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부상 명목으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제공받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행동강령에 위반됨.

- 추석을 맞이하여 학교장이 업무추진비로 회계담당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추석맞이 격려품 제공에 있어 예산집행 가능 여부나 상한액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14조제2항제4호의 “홍보용 물품”의 의미 및 가격 상한선?

- ▶ ①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제공 대상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②물품이 특정인·특정군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 아니어야 함. 가격 제한은 없으나 일반의 상식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여야 함.

관련규정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 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가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 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교장·교감이 교직원 상조회에서 상조회비(친목회비)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각 20만 원씩 2회(설, 추석)에 걸쳐 전달받았을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제3호 및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의한 ‘직원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한 해석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검토 의견

- 학교 내 직급·위 상하 구분 없이 전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상부상조, 친목도모의 본연의 목적과 달리 교장·교감 등 상급자에게만 명절에 선물(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형평성 등에 어긋나고 예외적인 지급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임. <후략>

(2011. 3.21.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형제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승진·영전·퇴직·임용 시 상호간 10만원 이상의 화환 등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검토 의견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과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의 소액(3만 원 이내)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의 선물에는 화환도 포함되고 형제 관계인 공무원 간에도 위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2011. 7. 1. 행동강령과)

사례 3

질의 내용

- 한국○○공사를 점검·감독하는 감독기관(중앙부처)에서 지사 등을 점검·감독하면서 현장에서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의견

- 행동강령은 직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甲)가 자신보다 열후적 지위에 놓인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乙)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반대로 甲이 乙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자 행동강령’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2011. 4. 4. 행동강령과)

사례 4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대학교가 수행하는 “IT 관련 건립사업”은 모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국비지원 사업임.
- ▽▽대학교에서 주관하여 해외 선진지 시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광역시 업무담당부서 팀장을 여행단원에 포함하고 사업비에서 담당공무원 여행경비도 부담하겠다고 하였음.
- 사업계획서 중 사업비 세부내역서 국외경비 산출근거에 ‘◇◇광역시 1인’이 명기되어 있고 사업계획서를 모 중앙행정기관에서 승인하고 국비가 교부되었음.
- 사업비 세부내역서 상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국비가 아닌 ▽▽대학교에서 매칭한 민간자본임.

◆ 질의 사항

- 위 해외 시찰에 ◇◇광역시 공무원이 참여할 경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의견

- 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음. 다만, 해당 출장의 목적,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임.
 - 특히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국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국외여비 집행 대상으로 감독 행정관청 직원이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자

(기관)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 위탁사업의 성격, 국외출장의 목적, 출장 공무원의 국외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에 첨부한 ‘사업비 세부내역’에는 외국의 사례조사를 위한 출장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사례조사에 ◇◇광역시 공무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9. 5. 6. 행동강령과)

FAQ

●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장이 명절을 맞이하여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며 제11조에 의하여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위반임.

● 최근의 물가 등을 감안하였을 때, 음식물·편의의 상한선인 3만 원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금품수수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며, 상한선(3만 원 이내)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한선 이내라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상한선(3만 원)은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도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 없음.

● 제14조제2항제4호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이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 » 기관 차원의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함.

● 행동강령의 금품도 대가성 여부를 따지는지?

- »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경우 해당 금품의 제공 목적 또는 성격(대가성)은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1회당 상한선 금액을 준수한다면 상습적으로 접대 받아도 무방한 것인지?

※ (예시) 직무관련자로부터 매일 2만 원 정도의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

- » 상한선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허용되지 않는 식사인 경우 3만 원 이내일지라도 위반임. 따라서, 직무와 무관하게 직무관련자를 만나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위반으로 판단됨.

● 공사 준공식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도 받을 수 없는지?

-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념 수건, 볼펜 등은 가능함. 그러나 공사 감독기관의 간부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하게 주문·구입한 기념품을 받을 수 없음.

● 모 단체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의 관람표(초대권)를 홍보차 감독부처 공무원들에게 보내왔는데 이를 제14조제1항제4호가 허용하는 홍보용 물품으로 보아 받아도 되는지?

- »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수수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와 같은 관람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용되지 않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제공대상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함.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제한 가격은 없으나 사회일반의 상식이나 상규에 비추어 보아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이어야 함.

●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 교사의 직무관련자는 재학생, 학부모, 계약 관련 업체 등으로 졸업생은 더 이상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재학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승의 날 단순히 감사의 뜻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받을 수 있음.

※ 과거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제한되는 경우 : 과거에 불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주고 직무관련자 관계가 끝난 후 금품을 받는 경우 제14조3항 위반(예 : 계약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에게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하고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금품을 ‘받는’ 행위 제한 (제14조) 위반일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주는’ 행위 금지(제14조의2) 위반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동 기준은 원칙적으로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시 적용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23조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별표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2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 기관의 업무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도 행동강령에서 제한하는지?

» 소속 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됨.

● 乙부처 예산담당 공무원(A)이 예산 총괄 甲부처 공무원(B)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환을 선물했으나 거절하여 반송되어야 온 경우에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화환을 보낸 것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선물을 제공한 공무원은 상대 공무원이 실제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반송한 B는 위반 아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 접대비가 1인 1회 4만 원까지 가능하여 행동강령 상 음식물·편의 수수 상한선(3만 원 이내)과 부합되지 않아 양 규정 간 상이한데?

» 두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할 것임. 가령,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대상 중에서 행동강령 상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만 원까지만 집행 가능하고, 비(非)직무관련자에게는 4만 원까지 집행 가능할 것임.

● 제14조제2항제3호의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란, 단체 명의로 사전에 정해진 회칙 등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단체 명의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함.

● 행동강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기준 초과분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부서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추석선물로 5만 원 짜리 선물을 받고 기준(3만 원) 초과분인 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경우?

» 초과한 부분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제17조제2항의 경조금품 중 금전을 기준(5만 원)에 초과하여 받은 경우만 해당됨. 즉, 경조금을 현금 7만 원을 받은 경우 현금 2만 원을 돌려줄 수 있음.

따라서 제14조에 의한 기준(3만 원)을 초과한 물품(선물)을 받은 경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물품 전부를 돌려주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위 조항에서 정한 3만 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수수할 당시 금품의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일단 위 조항에서 정한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이상 금품의 공여자에게 그 초과액을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략) 3만 원이 넘는 금품에 대하여 그 초과액을 공여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금품을 받았음으로써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인용.2013.6.4.)

제14조의2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관련규정

제14조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군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소관업무인 옥외광고물 사업과 관련한 지적성 기사가 지역인터넷신문에 게재되자 “기사를 내려달라, 또는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 등의 취지로 해당 기자에게 금품(현금)을 제공하였음.
- 해당 금품을 받은 기사는 위 금품을 △△군의 감사부서에 인도 하였음.

◆ 질의 사항

- ① 위 사건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 ② 위 사건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면 △△군 감사부서에 보관하고 있는 금품(현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검토 의견

-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 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질의①>에 대한 답변
 -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님. 다만, 참고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에의 저촉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②>에 대한 답변
 - 민간인이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처리절차는 행동강령이 정하고 있지 않음.

(2013. 8. 6. 행동강령과)

FAQ

● 교직원이 소속 학교 교장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개인비용으로 동양 난을 구입하여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때 동양 난을 경조금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선물로 보아야 하는지?

»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함. 그러므로 학교장은 직무관련공무원의 교직원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 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만 수수할 수 있음.

● A부처 예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B부처 공무원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7만 원짜리 화환을 선물하였으나 B부처 공무원이 거절하여 반송되어 온 경우에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동강령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기준 금액(3만 원)이 초과된 선물을 보낸 것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수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동강령에 위반됨.

제15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관련규정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운영지침 제1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국어교사(A)가 아는 선배의 제안으로 업체(甲)의 국어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동 업체로부터 집필 계약금으로 350만 원, 교과서 지도서 집필료 193만4천원 등 합계 543만4천원을 받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의견

- 저서를 집필하는 행위는 현재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2. 10. 11.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시 인재개발원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의 대가기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 우리위원회에서 각급기관에 통보한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 외부 강의·강연을 나가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각 기관의 행동강령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013. 1. 18. 행동강령과)

사례 3

질의 내용

-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 인재개발원에 위탁한 교육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KOICA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 강의를 지급할 경우 KOICA의 지급기준을 따르지, ◇◇시 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따를지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 KOICA가 ◇◇시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위탁하고
 -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되므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공문서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공문서 상의 요청자가 KOICA일 경우 외부강의이고, ◇◇시 인재개발원일 경우 내부강의로 판단
 - ◇◇시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라면 「◇◇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는 대가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를 받을 수 없음.
- (2013. 1. 18. 행동강령과)

사례 4

질의 내용

- ◎◎시 계약직 공무원이 모 사립 대학교에서 요청한 연구용역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였음. 연구비는 원고분량에 따라(원고지 1매당 1만 원) 용역 완료 후 지급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 행동강령 제15조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해당되어 사전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 의견

- 공무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제15조의 신고대상에 해당됨.

(2012. 4. 13. 행동강령과)

FAQ

● 신고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의 기준?

- » ○ 국가 :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교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 소속기관
- 국가의 소속기관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 ※ 공기업, 공사·공단 등에서 요청한 경우는 신고대상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강사료 산출 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인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통상적으로 강의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할 것이고, 이 때 적용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기준을 벗어나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말라는 규정임. 이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외부강의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이와 별도로 '12. 5월 우리위원회가 제시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즉, 요청기관의 지급기준 한도에 맞게 대가를 받았을지라도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 적용하는 수령기준 한도를 벗어나서 받을 수는 없음.

● 기관장이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 » 기관장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를 제출·관리하게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회의 등의 출장이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임.

●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 »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1장)”에 따라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출강하여야 함.(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근무시간 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 » 근무시간 외라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 사안임. 신고여부를 떠나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회의 등은 복무규정(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을 준수하여야 함.

● 휴직 중 외부강의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 신고하여야 함. 또는 신고는 외부강의·회의에 다른 복무 사항의 선결을 전제로 하므로 외부강의·회의에 따른 복무 상 조치(출강 보고 및 허가·승인 결재, 근무상황 처리 등)는 별도로 하여야 함.

● 외부강의 시 근무상황 처리(출장 또는 연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외부강의 수행과 관련한 복무 사항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11장을 참고하기 바람.

*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 :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 산하기관에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요청하고 소정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함. 이를 받고 출강해도 되는 것인지?

» 행동강령은 외부강의·회의등 수행 시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외부강의 허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외부강의 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외부강의)를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허가된 외부강의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 5월 권고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은 무엇인지?

» 일부 공무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산하기관 등에서 받는 고액의 강의료를 현관예우로 비판하는 등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외부강의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대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강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상한액)을 제시하고 각급기관에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400(장관) 300(차관)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초과된 1시간 당	300(장관) 200(차관)	120	100	

* 위 기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2012. 5.)」을 준용한 것임.

● (외부강의 대가 상한선 기준 관련) 직무관련 강의·강연은 대가 상한선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직무’란 무엇인지?

» 해당 공무원 개인의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하여 ‘직무’로 판단하여야 함.

● (외부강의 대가 상한선 기준 관련) 공무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대가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지?

» 장·차관급(400·300천원)을 최고 상한선으로 하여 기관별 직급 체계에 맞추되 대가기준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대외활동신청서’가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 ‘대외활동신청서’라는 것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호 서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면 대체하여도 무방함.

- 신고서 제출 당시 대가 여부나 규모 등 신고항목 중 일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사후에 신고해도 되는지?

» 알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해당 항목만 즉시 보완해야 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교사가 모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집필계약금 및 집필료를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 저서 집필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신문 등 공개매체에 기고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문 등 공개매체에 기고하는 경우 활동의 투명성 담보라는 신고 취지가 달성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외에도 방송 인터뷰도 그러함.

-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 2008.12.31. 개정(시행 2009. 2. 1.) 이전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음.

● 신고서에 기재하는 대가는 세전(稅前)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후(稅後)를 기준으로 하는지?

» 실 수령액(세후 금액)을 기재하면 됨.

●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 매 출강 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로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 일괄 신고 가능함.

● 열거된 행위유형 외에 신고대상은?

» 기고 : 대중에 공개되어 원할 경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매체에 실리는 원고를 작성하는 행위는 면제(「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체 외에 실리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도시건축전문가인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대가로 수당을 받은 경우

» 심의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대상임.

● 공무원이 소속 산하기관에 강의를 오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 강사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함.

- ◇◇청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들에게 ◇◇청의 소속기관인 ◇◇교육원에서 관련 강의를 함. ◇◇교육원이 ◇◇청 직원들에게 요청하여 강의를 하고 KOICA예산으로 강의료를 지급했는데 신고하여야 하는지?

» ◇◇청이 해당 사업 주체로서 소속 직원 중 강사를 선정하여 수행한 강의라면 내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아님.

- 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포커스』, 소비자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KDI 『알기쉬운 나라경제』 등에 기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 기고, 원고, 저술과 같은 행위는 신고 요건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잡지나 방송의 경우에는 대가를 사전에 신고하여 공개되게 함으로써 과도한 대가 수수를 예방하는 행동강령의 취지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권해석을 통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경쟁저널』 『월간소비자』, 『나라경제』도 일반에 공개·시판되는 매체이므로 행동강령 상 사전신고 의무는 면제된다고 볼 수 있음.

제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관련규정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침 제1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질의회시 사례

사례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관리공단 ◆◆사무소에서 관리중인 주차장의 임차인(A)이 임차료 중 500만 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담당부서장(B)이 차비 500만 원을 A에게 빌려주어 임대료를 완납토록 하였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A가 당해 금원을 상환하지 못 하였고
- A가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해지 절차 없이 ◆◆사무소 내부 간부회의 시 주차료 직접징수 결정을 한 후 주차료를 직접 징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내부 회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B가 직접 관리하였음.
- 주차료 수입금이 500만 원을 상회하자 B는 ◆◆사무소 관리 책임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수입금 중 A에게 빌려준 금액만큼인 5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1개월 후 주차료 징수가 종료되자 500만 원을 제외한 추가 수익금 잔액을 A에게 지급하였음.

❖ 질의 내용

- B가 당해 주차료 수입금에서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500만 원을 우선 상쇄하여 처리한 행위가 행동강령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조항에 위반되는지?

검토 의견

- A는 당해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는 B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A에게 금원 500만 원을 빌려준 행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고
- 귀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료 수입금 중 일부(500만 원)를 적절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로 유용하여 취득한 것은 행동강령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및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위반될 것으로 보임.

(2012. 8. 10. 행동강령과)

FAQ

❶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이자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참조)

❷ 공직자가 시세 월100만 원의 주택을 월50만 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임차받는 것은 가능한지?

» 공직자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임.

❸ 공무원 甲이 직무관련자인 乙의 소개로 직무관련이 없는 丙(乙의 친구)으로부터 금전을 빌렸을 경우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甲이 직무와 무관한 丙으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고는 하나, 이는 직무관련자인 乙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행동강령(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관련규정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의 ‘소속직원’은 행동강령 제정단위 내의 직원인지, 아니면 소속기관, 산하단체(산하 공공기관)의 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3호에 의하여 ◇◇부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소속직원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자(타기관 공무원, 문화예술인 등)도 소속직원과 마찬가지로 예외규정에 포함한다면 운영지침 제15조제2항 저촉 여부?
- 국가예산으로 경조금품을 집행할 경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조금품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검토 의견

- 공공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의 범위는
 -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및 운영지침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의해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업무직접관련자의 경조사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의 범위는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해 해당기관이 정하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 기존에 소속직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였던 것을 기관장 명의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로 확장한 해석

(2010. 1. 25.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교육행정시스템 내부통신망에 ‘경조사 알림’이라는 메뉴가 있음.
 - 동 메뉴는 공립학교 및 교육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들(교사, 행정직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에 해당되어 통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의견

- 행동강령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다만,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관’이란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 사립학교 교직원은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교육청의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열람할 수 있는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2011. 6. 21. 행동강령과)

사례 3

질의 내용

- 2011. 2. 3.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의원이 아닌 의회 소속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의견

-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 이 경우 직무관련자 관계 여부는 경조사 통지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011. 5. 9. 행동강령과)

사례 4

질의 내용

- 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시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에 직위를 게재한 화분을 보내는 행위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 의견

-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직위를 공표·게시하지 못하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을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지자체 장 명의의 경조금품은 제17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이 가능합니다.(단, 사비로 할 경우 5만 원 상한)
-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이 의원의 개인적인 개업식 등 화분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2009. 2. 3. 행동강령과)

FAQ

● 경조사의 범위는?

-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학교장이 남편의 개업식에 참석한 현재학교 및 전임학교 교직원으로부터 개업축하금을 받았음. 교직원들은 개업식 사실을 통지받음 바 없이 우연히 참석한 것이며 축하금을 교장에게 직접 전달치 않고 고사상에 냈는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 » 개업식은 행동강령의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의 개업식에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교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제14조제2항에 위반될 수 있음.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학교장은 배우자로 하여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함. 예를 들어, 서울시 등의 경우 서울시청과 자치구청은 별개의 기관이고, 경찰청과 같이 지역별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행정기관은 전체가 하나의 기관임.

● 경조사 통지 시 공무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가 가능한지?

- » 경조사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경조사 통지 시 직위·직급 기재는 제한되지 않음.

●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아닌 경우 통지 가능한지?

» 직무와 관련 없어진 자에게의 경조사 통지는 행동강령 상 제한 없음.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 각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는 당해 기관의 직무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웹공간으로서 직무관련자들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스로 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 직원에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지?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산하 기초지자체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 일괄통지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임.

관련규정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운영지침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 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그물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FAQ

●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10만 원의 근조화환을 보내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비의 상한선은 5만 원이나, 기관의 장 등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조금품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급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임.

● 기관장은 예산으로 5만 원(기관장 자격), 자비로 5만 원(개인 자격) 동시에 경조금품을 줄 수 있는지?

» 동시 지급은 가능하지 않음.

●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경조금품의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5만 원을 초과하여 주고받을 수 없음. 따라서, 비록 친구일지라도 5만 원을 초과한 화환을 보낼 수 없음.

●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 원의 경조금을 낸 경우, 처리절차는?

»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우연히 전해듣고 경조금품을 전달한 경우 5만 원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 있음. 다만, 한도액을 초과한 45만 원은 소정의 절차(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1조 참조)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 승진하였는데, 이를 경조사로 보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5만원 이내의 축하화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승진은 행동강령이 정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금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준은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이 아니라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임. 따라서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 원을 초과한 선물(화환)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위반임.



❏ 질의회시 사례

사례 1

질의 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서 ‘수수’라는 단어가 수뢰 및 공여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뢰 개념만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검토 의견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의 ‘수수(收受)’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2010. 5. 13. 행동강령과)

사례 2

질의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즉시 반환’의 의미는?
- 부득이하게 금품을 수수하여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하였는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 의견

- 행동강령 제21조의 ‘즉시’란 ① 금품을 수령한 즉시, ② 영득의 의사 없이 정당한 사유(금품 제공자가 공무원의 부재중에 몰래 놓고 간 경우 등 즉시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해제 즉시를 의미함.
- 금품을 제공자에게 직접 반환하였다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님.

(2012. 4. 25. 행동강령과)

FAQ

● 성희롱 금지를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까지 16개의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동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16개 행위기준 이외의 새로운 규정(성희롱 금지, 도박 금지, 외부활동 시 품위 유지 등)은 행동강령의 범위 밖의 규정으로서 기관별 행동강령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에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12조제14호,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조사·점검하거나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 반환하여야 할 금품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 금품과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임. 반환대상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반환대상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함.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회시집
2013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임광 B/D 본관

전 화 : 02) 360-6655 FAX : 02) 360-3554

디자인제작 : 리드릭 (Tel 02-2269-1919)



2013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회시집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본관(미근동 267) TEL. 02-360-6655 FAX. 02-360-3554